

지역협의회 규약

(제7차 개정 2009. 11. 13.)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헌장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한다. (개정 01. 12. 29.)

제2조(설립 및 목적) 지역협의회는 2개 이상의 시·군·구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 및 교육지역(구청) 단위마다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당해 지역 내 지구연합회의 총 의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특수연맹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지구연합 회의에 대한 지원업무를 시행하여 각개 지구연합회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09. 11. 13.)

제3회(명칭 및 소재지) 본 연맹의 각 지역협의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 지역협의회”라 칭하며, 사무소는 관할지역내에 둔다. (개정 01. 12. 29.)

제4조(사업) ① 지역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구연합회의 행정 및 재정지원책 강구
2. 지역후원회에 의한 재정조달과 지역연합회 보조지원
3. 대장연수회, 연구발표회의 연합 개최
4. 캠퍼리 등 야영행사와 훈육행사의 연합 개최
5. 지도자훈련과 대원 훈련의 연합 개설
6. 지구연합회 각종 포상에 대한 연합 수여
7. 기타 지구연합회와의 훈육면의 제 임무 협의

② 전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연합 사업은 지구연합회의 단독시행이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고, 연합 시행 시에는 각개 지구의 독립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인수) 지역협의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역협의회 위원장 1명
2. 지역협의회 부위원장 약간명
3. 당연직 지역위원 약간명

(당해 지구연합회 회장 전원)

(지역협의회 규약)

- | | |
|-----------|---------------------|
| 4. 직선지역위원 | 약간명 |
| 5. 지역커미셔너 | 1명 (개정 04. 12. 16.) |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승인) ① 지역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협의회에서 선출하여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09. 11. 13.)

② 지역협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09. 11. 13.)

③ 당연직 지역위원은 당해 지역의 지구 회장 전원으로 한다.

④ 직선 지역위원은 당해 지역의 유지인사 중에서 위원단장이 선임 위촉한다.

⑤ 지역 커미셔너는 부교수과정 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지방 치프커미셔너의 추천으로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이 위촉한다. (개정 09. 11. 13.)

제7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지역협의회 임원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지역 내의 스카우트 운동을 대표하고 지역협의회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지역위원은 관할하는 각 지구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관계인사와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지역의 유지발전과 운영의 책임을 진다.
4. 지역 커미셔너는 당해 지역 내의 스카우트 운동 기준의 유지와 발전에 관하여 지구커미셔너를 지도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 사무국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04. 12. 16.)

제8조(임원의 임기)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지구연합회 임원의 임기에 의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지역협의회) ① 지역협의회는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 위임과 회의록에 관하여는 헌장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중앙본부 및 지방·특수연맹이 제정한 규정 이외에 여하한 규칙도 제정할 수 없다. (개정 09. 11. 13.)

제4장 지역사무국

제10조(지역사무국)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역협의회 규약)

1. 지역사무국장 1명
2. 직 원 약간명
- ② 지역 사무국장은 부교수 과정의 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서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이 임면하며, 지방·특수연맹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09. 11. 13.)
- ③ 직원은 지역협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04. 12. 16.)

제5장 재 정

- 제11조(재정) ① 지역협의회는 임원의 찬조금과 지역협의회의 전입금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지역후원회는 지방·특수연맹의 승인을 받아 지역 내에 사회유지들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 ③ 지역후원회가 구성되는 지역 내에서는 지구연합회의 후원회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 지역협의회는 지방·특수연맹이 시행하는 모든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09. 11. 13.)

제13조(회계 연도) 지역협의회는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197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약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약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약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약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약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약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